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4회 임시회

검토 보고서

2023. 10. 17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9. 26.
- 회부일 : 2023. 10. 6. (의안번호 : 23-123)

2. 제안이유

- 유니세프한국위원회 ‘아동친화도시 인증’ 서면심의결과 보완사항을 반영, 아동친화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옴부즈퍼슨’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나. 아동의 ‘이익’을 ‘최선의’ 이익으로 문구 수정(안 제5조제2호)
- 다. ‘아동참여기구’ 운영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)
- 라. 아동영향평가 관련 문구 수정(안 제12조)
- 마. ‘아동실태조사’ 실시 조항 신설(안 제13조)
- 바. 위원회 구성 문구 수정(안 제17조제3항제5호)
- 사.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수정(안 제20조)
- 아. ‘옴부즈퍼슨’ 운영 조항 신설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7. 27.~ 8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유엔 아동 권리 협약」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마포구 아동친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제5호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신설하고
 -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명시조항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호 중 “아동의”를 “아동 최선의”로 하며,
 -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,
 - 안 제12조 중 “분석·평가”를 “정기적으로 분석·평가”로,
 -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3조까

지로 하고, 제13조를 신설하며,,

- 안 제17조제3항제5호중 “아동”을 “아동 대표 및 아동”으로
- 안 제20조제2항 중 “1회”를 “2회”로,
- 안 제23조를 삭제하고,
- 안 제2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 따라 도시조성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, 특히 마포구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 아울러 또한 자기결정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성인의 이익과 충돌 시 아동의 이익은 간과하게 됨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만을 위하여 일하는 옴부즈 퍼슨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충주시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담별 놀이형 체험 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마포구 특화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음부즈퍼슨 수당 등
 - 제24조(음부즈퍼슨)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②

3. 미첨부 사유

- 위원회 수당 등은 소액 지출로 “제12조 ②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” 규정에 해당되어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이지현
연 락 처	02-3153-8962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아동청소년과	서길자 (8980)	김미정 (8961)

참고자료

1. 관련법령

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유엔아동권리협약

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

- 내 용 :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
- 연 혁 :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 채택(현재 196개국에서 비준) ※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
- 구 성 :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

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

- 비차별
모든 아동은 부모, 인종, 종교, 언어, 빈부, 장애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지님
- 아동 최선의 이익
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
- 생존과 발달의 권리
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특별히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
- 아동 의견존중
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,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함

아동의 4대 권리

- 생존권
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,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,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
- 보호권
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, 고문, 징집, 부당한 형사 처분, 과도한 노동,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
○ 발달권

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, 여가를 즐길 권리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

○ 참여권

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, 표현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,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,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

2. 마포구 아동(0세-17세) 인구수

(2023. 7. 31현재)

구분	계	남	녀
전체 인구	364,978	170,734	194,244
아동(%)	42,271 (11.58%)	21,485 (12.58%)	20,786 (10.7%)